

기타재산이자수입

54 - 546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당초(A)	수정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기타재산이자 수입	2,366	1,200	1,200	3,639	3,639	2,439	203.3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
2. 수입 개요

-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사업 대기성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6,124	7,189	2,366	4,697

법정부담금

59 - 59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당초(A)	수정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법정부담금	998,632	628,610	628,610	993,271	993,271	364,661	58.0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<p>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.</p> <p>2. 전과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 제1항(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</p> <p>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담금</p> <p>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

2. 수입 개요

- 통신사업자 주과수할당대가(803,840백만원) 및 방송사업자 부담금(189,431백만원)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687,320	662,900	998,632	648,045

기타경상이전수입
59 - 596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당초(A)	수정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기타경상이전 수입	49,565	53,654	53,654	51,235	51,235	△2,419	△4.5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-

2. 수입 개요

- 기금사업비 집행잔액·정산환수금·기술료 등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28,163	34,686	49,565	63,987

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85 - 852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당초(A)	수정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	36,000	97,587	97,587	55,513	55,513	△42,074	△43.1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-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전년도('22년)말 통화금융기관(시중은행 등)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액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100,000	25,000	36,000	3,003

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85 - 85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당초(A)	수정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	83,529	82,936	82,936	67,069	67,069	△15,867	△19.1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-

2. 수입 개요

- 전년도('22년)말 비통화금융기관(증권사 등)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액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316,319	22,584	83,529	187,997

기금예수금
94 - 94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1년 결산	2022년		2023년		증감	
		당초(A)	수정	당초	수정(B)	(B-A)	(B-A)/A
기금예수금	282,729	526,964	509,164	310,075	310,075	△216,889	△41.2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(수입금)

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.
3. 차입금

2. 수입 개요

-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 부족분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수납액	-	207,389	282,729	509,164